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위임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(음력4월8일), 기독탄신일(12월25일)까지 확대하여 시행(제3조)

나. 제3조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함(부칙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없 음

대통령령 제 호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제2조제2호 또는 제7호”를 “제2조제2호·제6호·제7호 또는 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2조제2호·제4호·제7호 또는 제9호”를 “제2조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9호 또는 제10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